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60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황정아·박지원·허성무

김 윤 · 정동영 · 조승래

박용갑 • 이성윤 • 조인철

김문수 · 장종태 · 김남근

민형배 • 문금주 • 허종식

노종면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사회 전반 각 분야의 발전과 접목되는 핵심 전략 기술로 국가의 행정·경제·안보와도 직 결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까지 그 중요 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선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첨단전략산업 핵심 인재들의 해외 유출과 미래 인재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을 선

정하도록 하고 이때 인공지능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장이 결정하였던 병역지정업체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과는 별도인원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총원에 구애받지 않고 인공지능 등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산업의 인력 수요와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전략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2(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병무청장은 제36조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전략산업"이라 한다) 분야의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3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결정된 편입 인원에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로 편입이 결정된 인원은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편입 인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정원 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라 정원의

배정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9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전직을 원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 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전직 및 자격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36조의2(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병무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전략산업"이라 한다)분야의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선정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 우 별도로 편입이 결정된 인원 은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편입 인원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정원을 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라 정원의 배정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9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참단전략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전직을 원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수있다.
- ⑤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 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 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전직 및 자격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